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3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 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7항 단서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 ~ 2. 2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송주한 (☎ 2133-83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7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송주한(02-2133-8327)